

1. 개정이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용구를 항공기에 추가로 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진압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재난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허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공공목적 확대(안 제313조의2)

공공목적의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 범위가 산불 진화·예방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고층건물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소방용 드론의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목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나.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 탑재기준 보완(안 별표15)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때 필요한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하여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 보호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하는 객실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함

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안전교육 수수료 인하(안 별표47)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 온·오프라인 교육에 상관없이 5만원을 납부 하던 것을 온라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3.5만원으로 인하하여 교육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3조의2제1항제1호 중 “산불”을 “화재”로 한다.

별표 15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지원용구(Medical supply)

별표 15 제5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급의료용품 : 모든 항공기에는 다음 표의 구급의료용품(First-aid Kit)을 탑재하여야 한다.

별표 15 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의 표의 내용 중 “구급의료용품의 수”를 “감염예방 의료용구의 수”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감염예방 의료용구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감염예방 의료용구(Universal Precaution Kit)를 탑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할 때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감염예방의료용구(Universal Precaution Kit)의 수 이외에 추가 수량을 탑재하여야 한다.

다. 비상의료용구 :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를 탑재해야 한다. 다만 비행시간이 2시간 이

상이고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하며 1조 이상 탑재해야 한다.

별표 47 제32호의 수수료란의 “5만원”을 “5만원(다만, 온라인교육의 경
우 3만5천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감염 예방의료용구 추가 탑재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소지자가 안전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 장치의 긴급비행) ①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u>산불</u> 의 진화·예방 2. ~ 9. (생략) ② (생략)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 장치의 긴급비행) ① ----- ----- ----- -----. 1. <u>화재</u> ----- 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